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13 -
----------	--------

제출일자 : 2013. 11.
제안자 : 거창군수

①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매입

1. 제안이유

- 협소하고 노후화된 보훈회관을 이전하여 보훈가족의 명예선양과 전후 세대 안보의식에 기여
- 장애인의 운동재활 및 확대되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
- 협소한 노인회관을 이전하여 노인들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

2.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 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산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3,100	1,550,000			
취득	토지	거창송정택지지구내	대지	600	300,000	2014	보훈회관 건립	거창송정재 도개발사업 조합
		“	대지	1,000	500,000	2014	장애인복합 문화관건립	
		“	대지	1,500	750,000	2014	노인회관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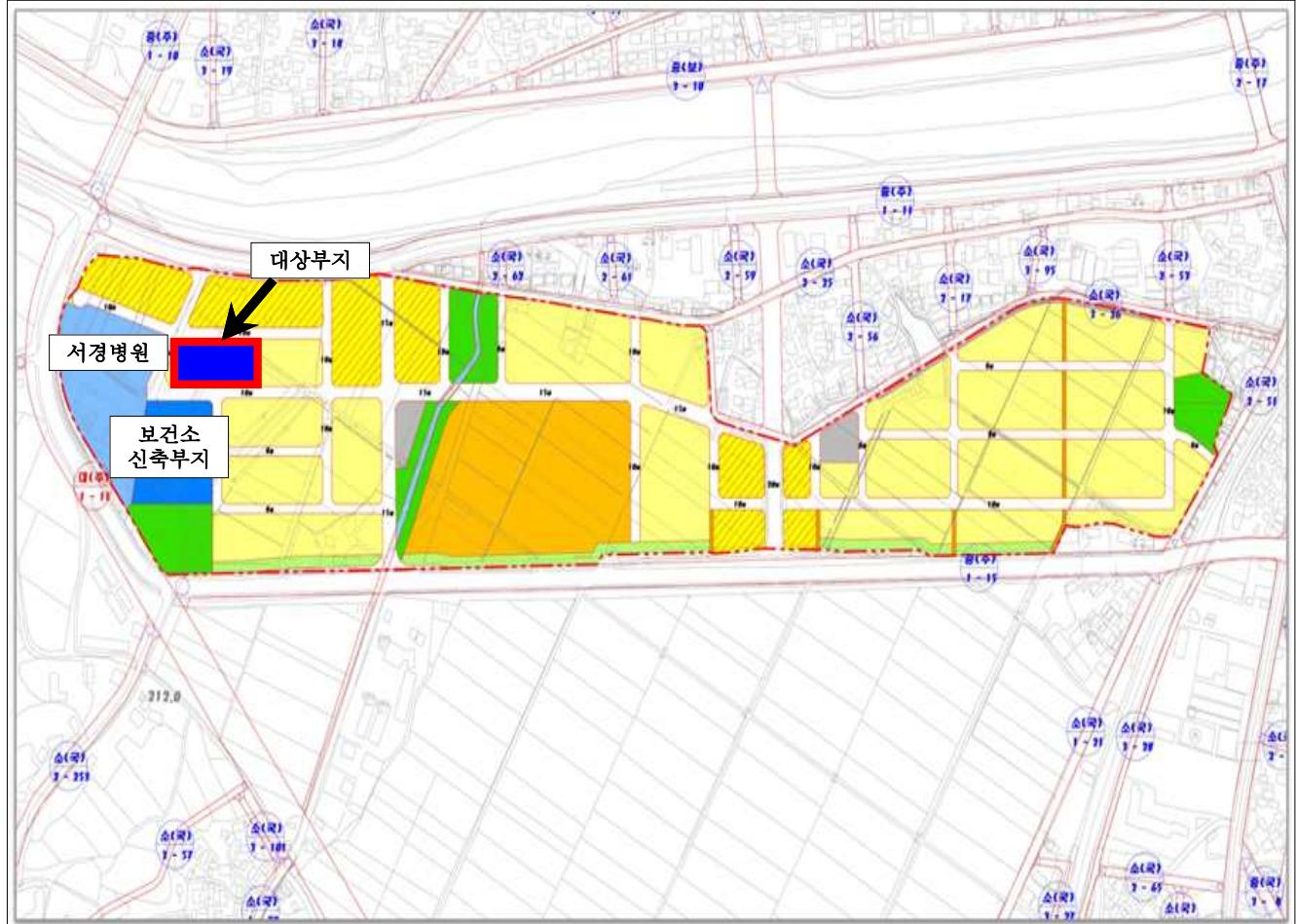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4조 및 제45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전경사진 및 조감도, 지적도 ⇒ “따로 불임”

위치도

□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13 -
----------	--------

제출일자 : 2013. 11.
제안자 : 거창군수

② 치유의 숲 조성사업

1. 제안이유

-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시설을 확대하는 치유의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대상지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산림휴양기반 확충 및 치유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2.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산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49,515.4	38,690			5명
취득	토지	가조면 수월리 산15	임	28,329	9,349	2014	치유의 숲 조성사업	표주숙
		가조면 수월리 산15-1	임	198	78			최경호
		가조면 수월리 산15-2	임	1,965	778			최경호
		가조면 수월리 산15-3	임	2,584	876			김혜자
		가조면 수월리 산15-4	임	708	233			최경호
		가조면 수월리 산16	임	15,000	2,325			용당소하부 락마을회
		가조면 수월리 산25	임	595	181			차정수
	건물	가조면 수월리 산19	임	136.4	24,870			오숙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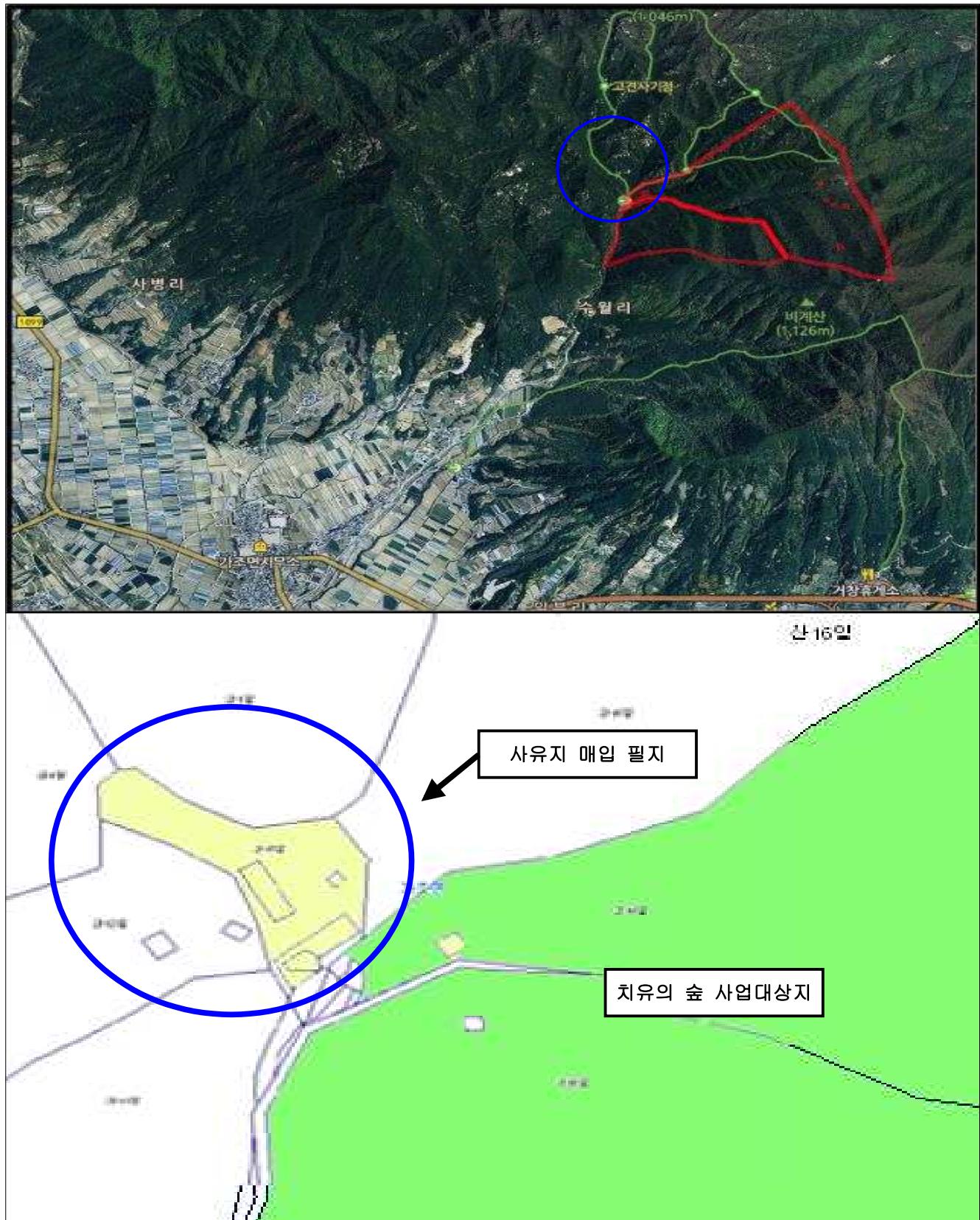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전경사진 및 조감도, 지적도 ⇒ “따로 붙임”

지적도 및 위성사진

□ 토지소재지 : 가조면 수월리 산15 외 6필지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13 -
----------	--------

제출일자 : 2013. 11.
제안자 : 거창군수

③ 도심지 자투리땅 녹지공간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1. 제안이유

-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공공사업 이후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을 매입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및 주민 쉼터 조성을 통한 녹색도시 형성에 기여코자 함

2. 취득재산의 표시 : ⇒ “따로 붙임”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4조 및 제45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전경사진 및 조감도, 지적도 ⇒ “따로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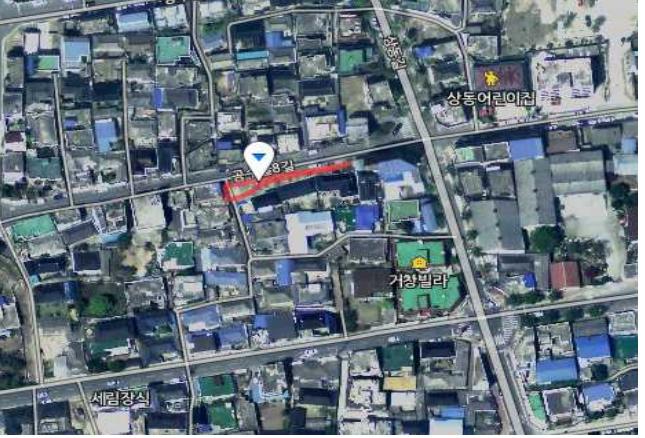
[붙임1] 취득재산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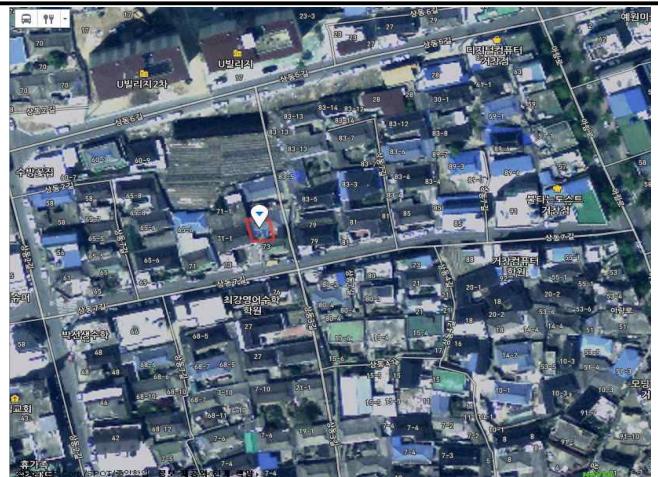
(단위 : m² ,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산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합계		43필지		3,632	1,087,181			
매매 취득	토지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229	대	89	28,124	2014~2016	도심지 자투리땅 녹지공간 조성사업	양영숙외1
"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227-9	전	80	13,840	"	"	심재춘외2
"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31-40	대	102	30,192	"	"	박경연
"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32-3	대	60	17,580	"	"	배무연
"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34-4	대	19	4,959	"	"	배무연
"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34-5	대	98	25,578	"	"	표점조
"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35-5	전	113	31,075	"	"	김미희
"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37-12	답	95	24,795	"	"	이해복
"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39-9	대	47	12,267	"	"	유영실
"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44-19	대	106	31,376	"	"	이차악
"	"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44-23	대	32	8,800	"	"	박경순
"	"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45-5	대	73	20,513	"	"	이은주외1
"	"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45-17	대	58	16,298	"	"	이봉규
"	"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31-3	대	99	24,948	"	"	오창혁
"	"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31-6	대	70	17,640	"	"	이성근
"	"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26-14	대	48	14,352	"	"	김철임
"	"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28-12	대	110	29,040	"	"	박병남
"	"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28-8	대	99	25,938	"	"	양순득
"	"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59-4	대	57	13,794	"	"	최태환
"	"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62-2	대	126	29,610	"	"	배순부
"	"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65-4	대	121	29,040	"	"	이무남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산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	”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28-1	대	39	8,697	”	”	양영숙
”	”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29	대	358	79,834	”	”	허도석
”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27-1	대	22	7,920	”	”	이이환
”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28-6	대	56	12,992	”	”	최춘화
”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893	대	38	8,740	”	”	강민정
”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898-2	대	47	10,810	”	”	이태희
”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898-3	대	59	15,753	”	”	서창복
”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04-7	대	125	27,750	”	”	심규표
”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812-1	대	38	26,068	”	”	정원호
”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813-8	대	36	24,336	”	”	정원호
”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46-16	대	13	3,926	”	”	박옥수
”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05-4	대	69	44,160	”	”	박옥수
”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128	대	146	31,244	”	”	이영순
”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093	주차장	132	29,964	”	”	최인준외1
”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934-4	대	68	15,912	”	”	박일범
”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935-10	대	80	154,536	”	”	대평마을회
”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071	대	79	18,565	”	”	강수택
”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072	창고	69	15,042	”	”	조영현
”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089-3	대	41	8,569	”	”	오상분
”	”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87-9	대	115	27,255	”	”	정동수
”	”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87-16	대	87	20,619	”	”	김보환
”	”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99	답	213	44,730	”	”	박분이외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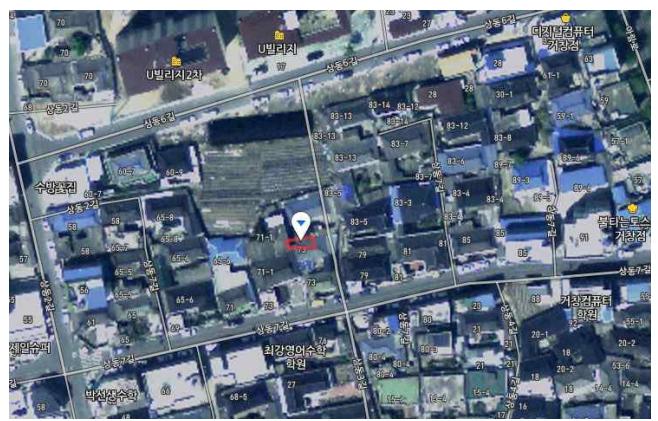
[붙임2] 위성도 및 전경사진

	
1 - 지 번 : 상림리 229(89m ²) - 소유자 : 양영숙외 1	위성사진
	
2 - 지 번 : 상림리 227-9(80m ²) - 소유자 : 심재춘외 2	위성사진
	
3 - 지 번 : 상림리 31-40(102m ²) - 소유자 : 박경연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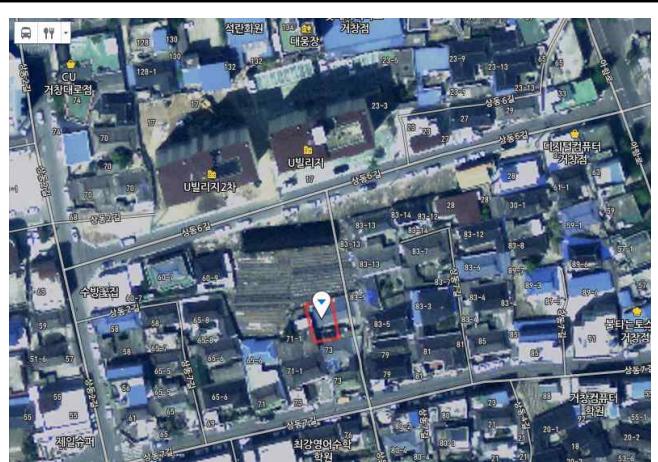
4
- 지 번 : 상림리 32-3(60m^2)
- 소유자 : 배무연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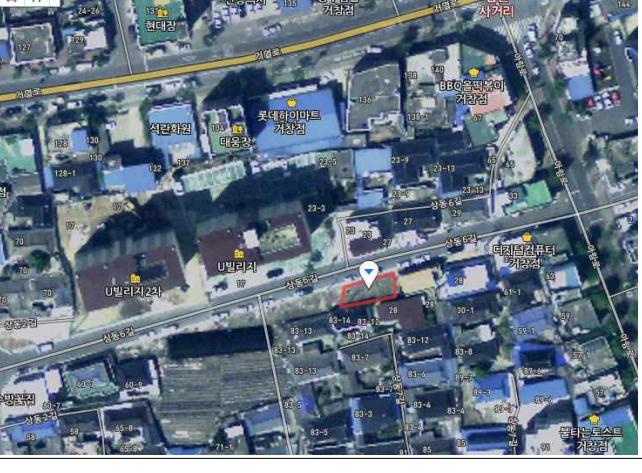
5
- 지 번 : 상림리 34-4(19m^2)
- 소유자 : 배무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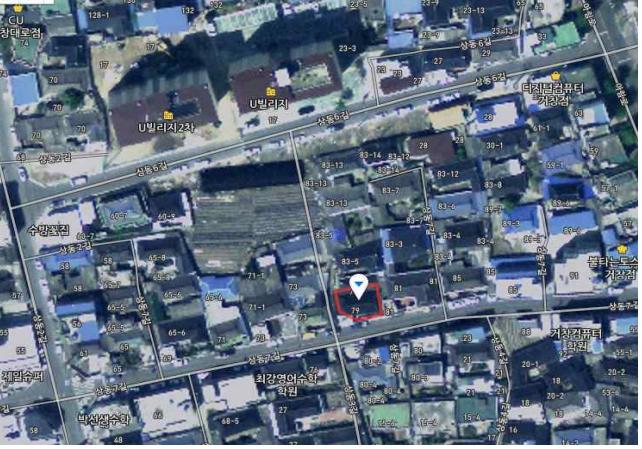
위성사진



6
- 지 번 : 상림리 34-5(98m^2)
- 소유자 : 표점조

위성사진

	
<p>7 - 지 번 : 상림리 35-5(113m^2) - 소유자 : 김미희</p>	<p>위성사진</p>
	
<p>8 - 지 번 : 상림리 37-12(95m^2) - 소유자 : 이해복</p>	<p>위성사진</p>
	
<p>9 - 지 번 : 상림리 39-9(47m^2) - 소유자 : 유영실</p>	<p>위성사진</p>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번 : 상림리 44-19($106m^2$) - 소유자 : 이차악 	<p style="text-align: center;">위성사진</p>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번 : 중앙리 44-23($32m^2$) - 소유자 : 박경순 	<p style="text-align: center;">위성사진</p>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번 : 중앙리 45-5($73m^2$) - 소유자 : 이은주외1 	<p style="text-align: center;">위성사진</p>



13 - 지 변 : 중앙리 45-17(58m²)
 - 소유자 : 이봉규

위성사진



14 - 지 번 : 중앙리 331-3(99m²)
 - 소유자 : 오창혁

위성사진



15 | - 지번 : 중앙리 331-6(70m²)
- 소유자 : 이성근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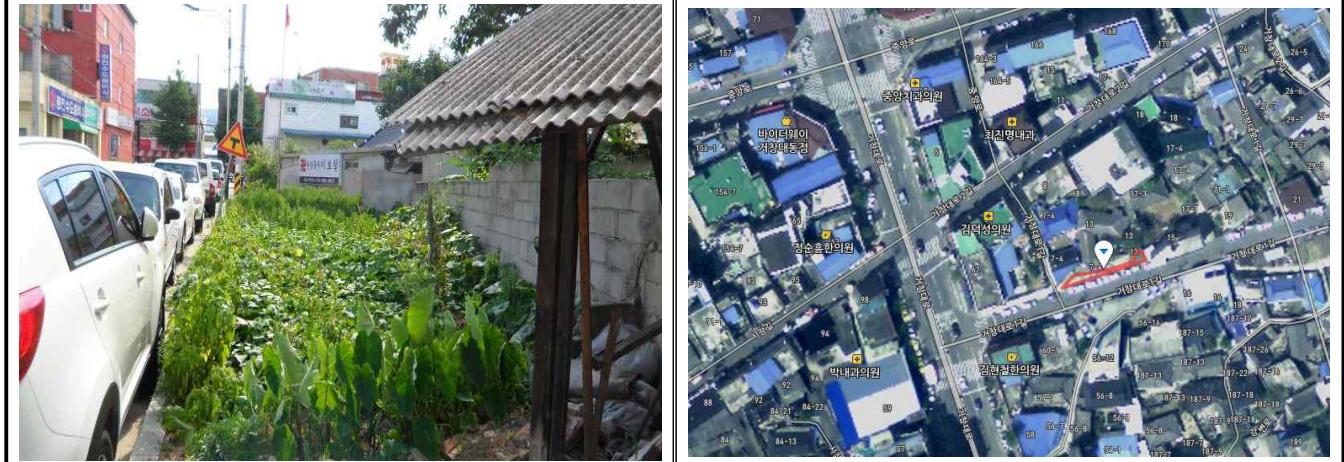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번 : 중앙리 326-14(48m^2) - 소유자 : 김철임 	위성사진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번 : 중앙리 328-12(110m^2) - 소유자 : 박병남 	위성사진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번 : 중앙리 328-8(99m^2) - 소유자 : 양순득 	위성사진

	
<p>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번 : 중앙리 59-4(57m^2) - 소유자 : 최태환 	<p>위성사진</p> 
	
<p>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번 : 중앙리 62-2(126m^2) - 소유자 : 배순부 	<p>위성사진</p> 
	
<p>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번 : 중앙리 65-4(121m^2) - 소유자 : 이무남 	<p>위성사진</p>

	
<p>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번 : 중앙리 28-1(39m^2) - 소유자 : 양영숙 	<p>위성사진</p>
	
<p>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번 : 중앙리 29(358m^2) - 소유자 : 허도석 	<p>위성사진</p>
	
<p>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번 : 대동리 27-1(22m^2) - 소유자 : 이이환 	<p>위성사진</p>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번 : 대동리 28-6(56m^2) - 소유자 : 최춘화 	위성사진
----	--	------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번 : 대동리 893(38m^2) - 소유자 : 강민정 	위성사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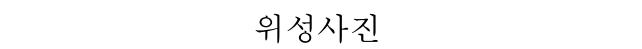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번 : 대동리 898-2(47m^2) - 소유자 : 이태희 	위성사진
----	---	------

	
<p>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번 : 대동리 898-3(59m^2) - 소유자 : 서창복 	<p>위성사진</p>
	
<p>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번 : 대동리 704-7(125m^2) - 소유자 : 심규표 	<p>위성사진</p>
	
<p>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번 : 대동리 812-1(38m^2) - 소유자 : 정원호 	<p>위성사진</p>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번 : 대동리 813-8($36m^2$) - 소유자 : 정원호 	위성사진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번 : 대동리 946-16($13m^2$) - 소유자 : 박옥수 	위성사진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번 : 대동리 105-4($69m^2$) - 소유자 : 박옥수 	위성사진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번 : 대평리 1128(146m²) - 소유자 : 이영순 	위성사진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번 : 대평리 1093(132m²) - 소유자 : 최인준외1 	위성사진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번 : 대평리 934-4(68m²) - 소유자 : 박일범 	위성사진

	
<p>3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번 : 대평리 935-10(80m^2) - 소유자 : 대평마을회 	<p>위성사진</p>
	
<p>3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번 : 대평리 1071(79m^2) - 소유자 : 강수택 	<p>위성사진</p>
	
<p>3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번 : 대평리 1072(69m^2) - 소유자 : 조영현 	<p>위성사진</p>

	
40 - 지 번 : 대평리 1089-3(41m^2) - 소유자 : 오상분	위성사진
	
41 - 지 번 : 송정리 187-9(115m^2) - 소유자 : 정동수	위성사진
	
42 - 지 번 : 송정리 187-16(87m^2) - 소유자 : 김보환	위성사진
	
43 - 지 번 : 김천리 99(213m^2) - 소유자 : 박분이외4	위성사진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땔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페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 ① 법 제16조에 따라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 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자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